

충청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1년 6월 15일
발 의 자 : 김영주, 박문희, 정 현,
김재중, 김동환, 이광희,
장병학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으며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 또는 “시·도지사”는 “교육감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, 이 조례에서 도지사를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제외한 것은 도지사를 법률에 의한 출석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하여 삭제한 것이므로
- 교육감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는 도지사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교육감을 도지사과 같이 삭제하고자 하며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관계공무원의 범위 일부 삭제(안 제2조)
 - 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“교육감”을 삭제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